

사회적 거리 두기 전국 1단계로 조정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

*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 유지

(2020.10.12. 0시부터 시행)

| 구분 | 수도권 | 비수도권 |
|-------------|---|---|
| 집합·모임·행사 | 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(100명 이상)는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(100명 이상)는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스포츠 행사 | 관중 수 제한(최대 30%) | |
| 국공립시설 | 운영 가능, 인원 제한(최대 50%) | |
| 고위험시설 |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*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| |
| 이외 다중이용 시설 | 식당·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|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|
| 교회 |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*, 모임·식사 금지 * 예배실 좌석 수의 30% 이내 |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|
|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| 운영 가능 | |
| 기관·기업 | 공공 | 유연·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(예: 전 인원의 1/3) |
| | 민간 | 유연·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|